

해링턴 플레이스 목감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에 의거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27.(목)(예정)]에 당사 홈페이지(www.해링턴플레이스목감역.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162-3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층~26층, 3개동 총 145세대
- 공급개요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민영 주택	56.7107	56	56.7107	19.4090	76.1197	49.0106	125.1303	31.3098	123	12
	71.0210	71	71.0210	23.4510	94.4720	61.3778	155.8498	38.8585	22	2
	합 계								145	14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주택형(약식표기)		56		71		계	
구 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기관추천 (85㎡이하)	국가유공자	2	(10)			2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0)			2	(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0)			2	(10)
	중소기업 근로자	3	(15)	1	(5)	4	(20)
	장애인	3	(15)	1	(5)	4	(20)
합 계		12	(60)	2	(10)	14	(70)

- 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③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는 예비당첨자입니다.

■ 분양일정(예정)

구 분	일정 (예정)	비 고
입주자모집 공고일(예정)	2023.07.27(목)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해링턴 플레이스 목감역' 분양홈페이지 게시
홍보관 개관일(예정)	2023.07.27(목)	장 소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414-1, 1층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예정)	2023.08.07(월) (09:00~17:30)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 접수 ※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한함 - 구비서류 미지참시 청약신청 불가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정)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3.08.14(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조회 가능
당첨자 계약일(예정)	2023.08.30(수)~09.01(금) 3일간, (10:00~17:00)	장 소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414-1, 1층

※ 위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건본주택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II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주택공급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 등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경기도</th><th>서울특별시</th><th>인천광역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able>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II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에 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해링턴플레이스투크닷컴)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V

유의사항 안내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당첨자발표일이 일반공급 당첨자발표일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동일주택 내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등)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여부를 판정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5년 동안 사업주체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및 신청 취소 등 정정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05.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위치도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162-3번지 일원]



약도	안내사항
	• 사 업 지 :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162-3번지 일원 • 홍 보 관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414-1, 1층 • 분양문의 : 1600-3320